



제420회국회(임시회)
제 1 차 교 육 위 원 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교육감 후보자 자격요건 변경 등〉
■ 조정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790호)

2024. 1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 목 차 】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정훈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0. 21.

3. 회부연월일 : 2024. 10. 2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외에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과 3년 이상의 교육 관련 경력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자격 제한으로 인하여 정당이 아닌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정책의 중립성이나 일관성 확보에 불리한 측면이 있고, 교육감직선제를 채택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시·도지사보다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할 실익이 높지 않아 교육감 선거제도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지방 교육정책 추진상 중립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4조).

Ⅲ. 검토의견

교육감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는 요건 및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요건을 폐지하여,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해당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u>사람으로서</u>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u>사람이어야</u> 한다.	제24조(교육감후보자의 자격) ----- ----- ----- <u>사람이어야</u> ----- ---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u>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u> 한다.	<삭 제>
1. 교육경력: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	

<u>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u> 2. <u>교육행정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u>	
--	--

현행법은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과 관련하여 해당 시도 피선거권자¹⁾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로서 후보자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이 아닐 것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각각 3년 이상 있거나 이를 합한 경력이 3년 이상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교육감의 선출과 관련하여 지방자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취지로 판단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 연혁을 살펴보면,

1) 「공직선거법」 제16조(피선거권) ③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公務로 外國에 派遣되어 選舉日前 60日 후에 귀국한 者는 選舉人名簿作成基準日부터 계속하여 選舉日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1991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학식과 덕망이 높고²⁾ 시도의회³⁾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고 교육관련 경력 20년 이상을 요구하였으나⁴⁾,

교육관련 경력은 1995년 개정시 15년 이상, 1997년 개정시 5년 이상, 2014년 개정시 3년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고, 정치적 중립 관련 요건도 당초 정당 당원이 아닐 것을 요구하였으나, 2000년 후보자등록일 기준 과거 2년간 정당 당원이 아닐 것으로 변경된 후 2010년 1년으로 완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감 자격요건 변경 연혁 >

연도	학식과 덕망	피선거권	정당당원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1991(제정)	○	시도의회 의원 피선거권	아닐 것	20년
1995	○	당해 시도지사 피선거권	상동	15년
1997	○	상동	상동	5년
2000	○	상동	후보자등록일기준 과거 2년간 아닐 것	상동
2007	삭제	상동	상동	상동
2010	—	상동	후보자등록일기준 과거 1년간 아닐 것	상동
2014~현재	—	상동	상동	3년

* 법령정보시스템

2) 2007년 전부개정시 삭제되었음.

3) 95년부터 시·도지사 피선거권으로 변경(시도지사 직접선거 95년부터 시행)

4) [법률 제4347호, 1991. 3. 8., 제정]

제32조 (교육감의 자격) ①교육감은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도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교육감은 교육경력 또는 교육전문직원경력이 20년이상 있거나, 량경력을 합하여 20년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한편, 최근 헌법재판소는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시를 하였음⁵⁾.

개정안은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해당 시도 피선거권은 유지하되, 후보자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경력 제한 및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현행 교육감직선제의 취지등을 고려하여 교육감후보자의 피선거권을 시도지사 후보자와 동일하게 설정하려는 것임.

< 교육감 자격요건 비교(현행과 개정안) >

구분	현행	개정안
해당 시도 피선거권	필요	유지
후보자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아닐 것	필요	삭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삭제

지방교육자치제에서 요구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에 대한 요청과 주민자치의 원칙이라는 민주적 정당성의 요청,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석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5)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 제24조 제2항은 교육전문가가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의 요청에 부합한다. 결국 위 조항은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함.
(2009. 9. 24. 2007헌마117, 2008헌마483·563(병합))

한편, 교육감의 자격요건은 교육감의 퇴직요건과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생각됨⁶⁾⁷⁾.

개정안에 대해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교육부】 : 신중검토

- 헌법상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에서 1년간 당적 보유 금지 요건 및 교육(행정)경력 요건을 삭제하여 시도지사 자격요건과 일치시키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현재 교육감 선출 제도의 개편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가 필요함
- 교육청(인천, 광주,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 신중검토
 -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중립성을 고려할 때 현행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는 교육감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건 계류되어 있으므로, 이와 병합하여 심사될 필요가 있겠음⁸⁾⁹⁾.

6) 현행법은 교육감의 퇴직요건으로 피선거권이 없게될때, 정당의 당원이 된 때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후보자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닐 것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을 경우 퇴직요건(제24조의3제3호)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균형적이라고 생각됨.

7) 제24조의3(교육감의 퇴직)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1. 교육감이 제23조제1항의 겸임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한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지거나 합쳐진 경우 외의 다른 사유로 교육감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함으로써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를 포함한다)
3. 정당의 당원이 된 때
4. 제3조에서 준용하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에 따라 교육감의 직을 상실할 때

8) 김민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354), 서지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226), 송석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67호)

9) 이상 3건의 법률안은 모두 교육감 런닝메이트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함.

< 교육감 자격요건 변경 관련 유사법안 비교 >

구분	현행	김민전 의원안	서지영 의원안	송석준 의원안	조정훈 의원안
해당 시도 피선거권	필요	삭제	필요	필요	필요
후보자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정당 당원 아닐 것	필요	삭제	삭제	필요	삭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	3년	5년	3년	5년	삭제

문 의 처

02)6788-5185